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3. 6. 11.] [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 7호라목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3.7.26., 2022.6.30.>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5.4., 2013.7.26.>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그 밖에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7.26.>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할 것<개정 2013.7.26.>
 -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과열·충격 및 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2022.6.30.>
7.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하천 등에 투기하지 말고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8.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이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① 지정수량의 5분의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90퍼센트 내지 95퍼센트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13.7.26.>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이동탱크[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14.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섭씨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9.26., 2013.7.26., 2022.6.30.>
15.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16.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해당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 서만 할 것 <개정 2013.7.26.>
17.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견고하게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개정 2013.7.26.>
18.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5항제4호타목의 규정에 따른 상치장소 또는 같은 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개정 2013.7.26.>

19.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8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 관련 별표 6 I(안전거리)·II(보유공지) 및 IX(방유제)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4., 2022.6.30.>
20. 위험물을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22. 위험물을 옥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된 실에서 할 것
- 가.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은 불연재료로 만들 것
- 나.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 다.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 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2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2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해당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 설비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2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에는 온도 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2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27.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개정 2013.7.26.>
2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개정 2013.7.26.>
29.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당해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물 또는 불연성액체, 불연성기체를 사용한 압력)에 새거나 변형 등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3.7.26.>
-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 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라. 배관에는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해당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해당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개정 2013.7.26.>

30.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개정 2013.7.26.>

31.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를 것<개정 2013.7.26.>

32.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방지에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고, 해당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3.7.26.>

3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② 소량위험물을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옥외의 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탱크는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두께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물을 채워 누수 또는 변형이 없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고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 |
|-------------------|
| 탱크의 용량 |
| 판의 두께 |
| 40리터 이하 |
|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
|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

-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 2,000리터 초과
- 1.0밀리미터 이상
- 1.2밀리미터 이상
- 1.6밀리미터 이상
- 2.0밀리미터 이상
- 2.3밀리미터 이상
- 2.6밀리미터 이상
- 3.2밀리미터 이상

다.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탱크의 외면에는 녹슬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탱크의 밑판을 지반면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마. 압력탱크에는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할 것

바.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 또는 인화점 이상의 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압력탱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사. 주입구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에는 탱크 직근의 부분에 수시로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할 것
 자.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인화점이 130도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누설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차. 탱크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옥내의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개정 2013.7.26.>

가. 해당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나.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3. 지하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라목 내지 바목 및 차목의 규정에 따르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개정 2013.7.26.>

가.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라.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탱크의 배관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C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바. 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사.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이동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할 것

나.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다.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라.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마.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의할 것

바.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U볼트 등으로 차량의 샤시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아.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3.7.26.>

자.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 적재함을 설치할 것

차.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제품명(통칭명)과 타목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타.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9.26.>

- (2)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③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그 밖에 설비는 제3조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5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2조 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소량위험물이 아닌 위험물에 대해서는 해당 각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 위험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2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가목을 제외한다)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6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서식(2부를 작성한다)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규정한 위치·구조·설비에 관한 도면 및 명세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9.26., 2022.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승인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개정 2013.7.26.>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개정 2013.7.26.>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을 위한 장소는 공사장,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보관창고업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곳으로 할 것
2. 저장시설은 옥내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 시설(컨테이너식의 것에 한한다.) 또는 옥외저장시설로 하고, 해당 저장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옥외저장시설에 제2류·제4류 및 제6류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준하는 것 외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2, 2019.7.26.>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이상의 방화벽, 철책 등으로 경계표시를 할 것

<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M 이상

4M 이상

5M 이상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저장시설 또는 취급시설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른 제조소 등의 기준에 준하여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할 것<개정 2013.7.26.>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할 것

6.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적응성이 있는 대형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을 방사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개수를 비치할 것<개정 2013.7.26.>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규칙에 따른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7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6, 2015.1.2, 2019.7.26., 2022.6.30.>

1. 해당 각 조에 따라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뚜렷하게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2.6.30.>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각 조에 따라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2.6.30.>

제8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이란 "영 제3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제2류,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개정 2007.5.4, 2008.9.26., 2013.7.26., 2022.6.30.>

제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의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1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3.7.26.>

1. 제2조에 따른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
 3. 제5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
 4.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사람 <개정 2013.7.26., 2022.6.30.>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대상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1회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만을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2.6.30.>

부 칙 <제3050호, 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제3항 제4호타목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확보하여야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강원도화재 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86호,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0) 생략

(41)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42)~(49) 생략

부칙 <제4435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